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2013년 5 월 22일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규정 제 64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시설장 및 직원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복지관과 어린이집에는 각각 관장과 원장을 두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②관장과 원장은 임기 3년의 계약직이며, 회장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관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복지관과 어린이집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인사규정에 의한다.
- ④회장은 필요시 협의회와 복지관, 어린이집간에 직원의 전보를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
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2013년 5 월 22일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65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예산의 편성)중 ‘사회복지법인’을 ‘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’로 한다.

제13조(준용) 중 ‘사회복지법인’을 ‘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’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
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2013년 5 월 22일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66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문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문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준용) 중 ‘사무관리규정’ 을 ‘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’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